

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(kreach.me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 
 <개정 2019. 12. 20.>

##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
신청인	상호(명칭)	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성명(대표자)	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(전자우편: )
	소재지(사업장)			(전화번호: ) (팩스번호: )
요청자료	① 화학물질명 (총칭명)			
	고유번호 (CAS No. 등 화학 물질 식별번호)			
	② 시험자료 명칭			
	③ 시험자료 사용용도			
	시험자료의 사용 단위	[ ] 개별 사업자 [ ] 협의회		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   월   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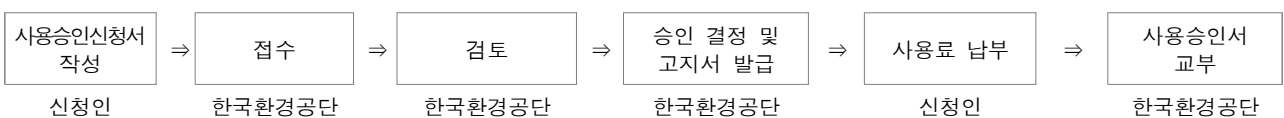
###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20,000원 (중기업은10,000원, 소기업은4,000원)
------	----	--

#### 작성방법

1. 이 사용승인 요청서는 화학물질별로 나누어 작성한 후 요청합니다.
2. ①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적습니다.
3. ②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시험자료의 명칭을 적습니다.(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나열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)
4. ③란은 승인 완료 후 해당 시험자료의 용도를 적습니다.

#### 처리절차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